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

형사과

법원 출석 통지 혹은 납부 및 몰수 (Notice to Appear in Court or Post and Forfeit)

제 7 지구의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의한 해당 지구내 체포 관련 및 USPP/USCP/SS

지장 (Thumb Print)

인물 정보

체포 번호	CCN	PDID	생년월일
Station Clerk/ 경찰관/배지/유닛/Cad. 번호		Offense PSA	

체포된 자의 성명: 성 (Last), 이름 (First), 중간이름 (Middle)

귀하는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모든 체포 사유를 기재]

석방 및 법원 출석에 관한 정보

소환장 석방 (CITATION RELEASE ONLY)

경찰관: 해당 법정 위치를 표기하고 법원 웹사이트에 있는 일정표를 선택하여 날짜를 선택하십시오.

귀하는 아래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위치한 컬럼비아 특별구 고등법원에 출석한다는 약속 하에 석방되었습니다.

DC 검찰 기소 (ONLY OAG Charge(s))

출석 시간은 기소 사유에 따라 정해집니다.

음주운전 관련 위반	9 AM
기타 교통법규 위반	10 AM
교통법규 외 다른 법 위반	11 AM

_____ at _____

날짜 시간

116호 법정

연방 기소 (ONLY U.S. Charge(s))

_____ at **9:30 a.m.** C-10호 법정

날짜 시간

연방 및 DC 검찰 기소 (U.S. AND OAG Charges)

_____ at **9:00 a.m.** 116호 법정

날짜 시간

_____ at **9:30 a.m.** C-10호 법정

날짜 시간

본인은 출석 통보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위에 표기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판사직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만일 출석하지 못하여서 출석 실패에 관하여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벌금, 형량 또는 벌금 및 형량 모두를 수반하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체포된 자의 서명 날짜

금전 납부 및 몰수 (POST AND FORFEIT MONEY ONLY)

기소사유: _____ 납부 및 몰수액: _____

\$

본인은 기소사유에 따라 정해진 보증금(금액)을 납부하고 몰수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소사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몰수되는 경우, 법원 재판을 받을 본인의 권리를 포기함을 이해합니다.

체포된 자의 서명 날짜

모든 체포된 자에 대한 주의사항

고등법원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단을 경우, 익일 영업일 오전 9시에 반드시 법원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법원 결정부 보석에 의한 석방 (COURT ORDERED BOND RELEASE ONLY)

경찰관: 체포된 자가 D.C. 고등법원 판사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대한 보석금을 납부하는 경우 다음을 기재하십시오.

귀하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기에 D.C. 고등법원 판사가 발부한 판사직권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아래 날짜와 시간에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위치한 C-10호 법정에 반드시 출두하여야 합니다.

_____ at **9:30 a.m.**

날짜 시간

본인은 법원이 정한 보석금을 납부하였으며, 상기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판사직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만일 출석하지 못하여서 출석 실패에 관하여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벌금, 형량 또는 벌금 및 형량 모두를 수반하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보석 금액

\$ _____

보석금을 납부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성명

주소

배심원의 경우 (JURORS ONLY)

귀하는 D.C. 고등법원에 배심원으로 출석하지 않았기에 판사직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귀하는 아래 날짜와 시간에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위치한 D.C. 고등법원, 3130호 [배심원 사무실]에 출두하는 조건으로 오늘 석방될 것입니다.

다음 영업일

at **9:30 a.m.**

본인은 위에 표기된 날짜와 시간에 출석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판사직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또한, 만일 출석하지 못하여서 출석 실패에 관하여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벌금, 형량 또는 벌금 및 형량 모두를 수반하는 형사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체포된 자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음을 인정

본인은 체포된 자에 관한 통지서를 받고 읽었음을 인정하며, 본인의 권리를 이해합니다.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고등법원 Acting Clerk에 의해 발부됨

체포된 자에 관한 통지서

귀하의 석방 및 준수 의무에 관해 설명한 아래 정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 석방 (CITATION RELEASE)

귀하가 자격이 될 경우, 본 서류 1페이지의 소환장 석방란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500 Indiana Ave., NW, Washington, D.C.에 위치한 D.C. 고등법원에 출석한다는 약속 하에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귀하에 대한 형사 사건을 제기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직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사건을 포기할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출두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소환장으로 인한 석방의 조건으로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 특정 인물, 또는 인물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며 접근하지 않을 것 및/혹은 특정 장소에서 떨어져 있을 것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경찰관이 즉시 귀하를 체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열리는 다음 날 법원에 출두하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가 어떤 범죄에 대하여 귀하를 기소할 경우, 귀하는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 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

중요 정보

귀하가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귀하를 법원에 기소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기소하였는지를 알고자 할 때 확인하여야 할 정보가 소환장 석방 서류에 실려 있으므로 귀하의 기소인부일에 법원에 출석할 때 상기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정보에 관하여

귀하의 사건현황 정보를 원하신다면 D.C. 고등법원 내 형사과 고객 서비스 라인인 (202) 879-1373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보석에 의한 석방 (BOND RELEASE)

귀하는 판사직권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귀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한 금액을 보석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보석금을 낼 경우, 귀하는 본 서류 1페이지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것입니다. 상기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직권 체포영장이 새로 발부되어 귀하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포기할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출두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날짜에 맞추어 출두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낸 보석금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금전 납부 및 몰수 (POST AND FORFEIT MONEY)

귀하가 금전 납부 및 몰수를 선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기소되고 귀하에게 이를 선택할 자격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정한 금액을 내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귀하가 설정된 금액을 내기로 선택할 경우, 해당 금액이 몰수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금전을 납부하고 몰수당할 경우, 이에 관하여 추후 어떤 컬럼비아 특별구 법원이나 기관 내 형사, 민사 또는 행정상의 소송 및 행위에서 제재, 처벌, 가중 형량 또는 자격 상실/정지를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체포 기록은 남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체포 기록을 봉인하도록 고등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록을 봉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컬럼비아 특별구의 국선 변호인 서비스 연락처인 202-628-1200이나 www.pds.dc.org의 이메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마음을 바꾸어 기소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을 납부한 후에 법원에 출석하기로 할 경우, 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몰수취소신청 (Motion to Set Aside Forfeiture)"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일 정부가 귀하의 납부 및 몰수 결정을 반대하기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사건의 검찰인 컬럼비아 특별구의 검찰청에서 90일 이내에 "몰수취소신청 (Motion to Set Aside Forfeitur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법원에서 상기 신청을 승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귀하나 정부의 신청이 승인되면, 기소가 회복되고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귀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 납부 및 몰수를 택하는 대신 본 형사 사건을 계속하기를 선택한다면 귀하는 소환장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자에 관한 중요 정보 (IMPORTANT NOTICE TO ARRESTED PERSONS REGARDING TRAFFIC OFFENSES)

귀하가 무면허, 면허정지 후 운전, 또는 면허취소 후 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경우, 귀하의 법원 날짜에 다음 서류를 지참해 간다면 사건을 일찍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 컬럼비아 특별구 차량 관리국 (District of Columb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서 발급한 유효 면허(혹은 임시면허), 또는 유효한 타 주 면허 및 15년간 운전 기록
-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후 운전: 만일 귀하의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다면 미지급 티켓이나 양육 의무 관련 지급금을 납입하였음을 포함해 정지나 취소를 초래한 문제를 시정하였으며 면허회복 수수료를 냈음을 명시하는 인증 서류를 컬럼비아 특별구 차량 관리국이나 귀하가 거주하는 주의 차량 관리국에서 떼어 제출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면허가 회복되었고 관련 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음이 서류에 명시되어야 합니다.